

【 1 】 제19회의회(임시회)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3. 5. 19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19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- 회기 : 1993. 5. 21 (1일간)

【 2 】 질원교육위원회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

제의년월일 : 1993. 5. 19.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질원교육위원회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를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코자 하는 것임.

제안이유

- 추천근거 :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
- 추천대상자

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경력여부
변 창 우 (邊昌雨)	380305 - 1221721	광적면 가남리 81	비경력